

# 서울산업진흥원 - IBK기업은행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서

서울산업진흥원과 IBK기업은행은 긴밀한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산업진흥원과 IBK기업은행이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협력사항)

서울산업진흥원과 IBK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IBK기업은행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재기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1억원의 자금을 출연한다.
2. 서울산업진흥원은 '재기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투자조합의 수탁은행 사업자를 IBK기업은행으로 활용한다.
3. IBK기업은행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추천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울산업진흥원과 IBK기업은행은 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 선정 및 상호공간제휴 등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대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5.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양 기관의 노하우 공유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제3조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

양 기관은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5조 (협약의 유효기간 및 변경)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양 기관이 본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연장기간의 만료시도 이와 같다.
- ② 양 기관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기관의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의하고, 그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정함이 없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 제7조 (기타사항)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하는 협력사항 이외에도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협력 가능한 부문에 대한 협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도진

주형철

김도진